

『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2항의 “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” 을 근거로 「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 를 제정 (1995.1.1) 시행하여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,
- 상위법인 「도로법」 제117조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105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「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」 에 신설하고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
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
상위법인 「도로법」 제117조와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105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, 과태료 부과기준을 「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」에 신설 규정함으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,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